

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
제243회 임시회

검 토 보 고 서

2020. 9. 7. (월)

검 토 안 건	발 의
“서울특별시 마포구 장기요양요원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안”	의 원



복지도시위원회
(전문위원 조광현)

“서울특별시 마포구 장기요양요원 처우 개선 및
지위향상을 위한 조례안”

검 토 보 고 서

(검토보고자 : 전문위원 조광현)

1. 회부경위

- 제안자 : 강명숙 의원 외 7인
- 제안일 : 2020. 9. 2.
- 회부일 : 2020. 9. 3. (의안번호 : 20 - 123)

2. 제안이유

인구 고령화에 따라 노인 돌봄에 대한 역할과 책임이 커지면서 노인 등의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 등에 직접 종사하는 요양보호사 등 장기요양요원들의 처우 개선 및 지위를 향상시킬 수 있도록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.

3. 주요내용

- 가. 조례 제정 목적 및 용어의 정의(안 제1조~안 제2조)
- 나. 구청장의 책무(안 제3조)
- 다. 종합계획의 수립 시행 및 실태조사(안 제4조~안 제5조)
- 라. 장기요양요원의 처우개선, 지위향상 및 권리보장에 관한 사항(안 제6조~ 안 제7조)
- 마. 장기요양기관의 장의 책무 및 표창에 관한 사항(안 제8조~ 안 제9조)

4. 참고사항

- 관계법령 : 「노인장기요양보험법」 제4조(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)
- 예산조치 : 실태조사 용역비 25백만원(구비)
- 입법예고 : 제출의견 없음(기간 : 2020. 8. 19. ~ 2020. 8. 24)
- 규제사항 유무 : 규제사항 없음
- 부패영향 평가 : 권고사항 없음

5. 검토의견

- 본 조례안은 「노인장기요양보험법」 제4조에 따라 우리구 장기요양요원의 처우를 개선하고 복지를 증진하며 지위를 향상시키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임.
- 총 10개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는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보면,
 - **안 제4조부터 제5조까지** 장기요양요원의 처우개선을 위하여 3년마다 보건복지부장관의 기본계획에 따라 세부계획을 수립·시행하고,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음을 규정하였음.
 - **안 제6조**는 장기요양요원의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,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·훈련, 관련 조사·연구 사업 등에 대한 근거 규정을 마련하였으며,
 - **안 제7조 및 제8조**는 장기요양요원이 업무 현장에서 열악한 근로조건 및 폭언·폭행 및 성희롱 등 환경에 노출되는 문제를 막고자 장기요양요원의 신분보장 및 장기요양기관의 장의 책무를 규정하였음.

- 장기요양요원이란 장기요양기관에 소속되어 노인 등의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자로 요양보호사, 사회복지사, 간호사, 간호조무사, 치과위생사가 이에 해당됨. 이 중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요양보호사는 요양보호사를 간병인 또는 가사도우미 정도로 바라보는 낮은 사회적 인식 등 근로조건이나 처우가 열악한 실정으로 요양보호사 처우개선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대두되고 있음.

- 인구의 급속한 고령화로 인해 노인 돌봄서비스에 대한 수요도 증가하는 추세임을 감안할 때 본 조례안이 제정되면 장기요양요원의 처우 개선을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어 노인 돌봄서비스의 질적 수준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며,
 장기요양요원의 처우 개선 및 복지 증진, 지위 향상을 위하여 적극 노력해야할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규정하고 있는 「노인장기요양보험법」 제4조에 따라 적법하게 제출된 안건이라 판단됨.

■ 노인장기요양보험법

제2조(정의)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.

5. "장기요양요원"이란 장기요양기관에 소속되어 노인등의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.

제4조(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등)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이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할 수 있는 온전한 심신상태를 유지하는데 필요한 사업(이하 "노인성질환 예방사업"이라 한다)을 실시하여야 한다.

② 국가는 노인성질환예방사업을 수행하는 지방자치단체 또는 「국민건강보험법」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(이하 "공단"이라 한다)에 대하여 이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.

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인구 및 지역특성 등을 고려하여 장기요양급여가 원활하게 제공될 수 있도록 적정한 수의 장기요양기관을 확충하고 장기요양기관의 설립을 지원하여야 한다.

④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기요양급여가 원활히 제공될 수 있도록 공단에 필요한 행정적 또는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.

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기요양요원의 처우를 개선하고 복지를 증진하며 지위를 향상시키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.

⑥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의 특성에 맞는 장기요양사업의 표준을 개발·보급할 수 있다.

제6조(장기요양기본계획)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노인등에 대한 장기요양급여를 원활하게 제공하기 위하여 5년 단위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장기요양기본계획을 수립·시행하여야 한다.

1. 연도별 장기요양급여 대상인원 및 재원조달 계획
 2. 연도별 장기요양기관 및 장기요양전문인력 관리 방안
 3. 장기요양요원의 처우에 관한 사항
 4. 그 밖에 노인등의 장기요양에 관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
-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장기요양기본계획에 따라 세부시행계획을 수립·시행하여야 한다.

제6조의2(실태조사)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장기요양사업의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3년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조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.

1. 장기요양인정에 관한 사항

2. 제52조에 따른 장기요양등급판정위원회(이하 "등급판정위원회"라 한다)의 판정에 따라 장기요양급여를 받을 사람(이하 "수급자"라 한다)의 규모, 그 급여의 수준 및 만족도에 관한 사항
 3. 장기요양기관에 관한 사항
 4. 장기요양요원의 근로조건, 처우 및 규모에 관한 사항
 5. 그 밖에 장기요양사업에 관한 사항으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
-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방법과 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.

제31조(장기요양기관의 지정) ① 제2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재가급여 또는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시설급여를 제공하는 장기요양기관을 운영하려는 자는 소재지를 관할 구역으로 하는 특별자치시장·특별자치도지사·시장·군수·구청장으로부터 지정을 받아야 한다.

② 제1항에 따라 장기요양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장기요양에 필요한 시설 및 인력을 갖추어야 한다.

③ 특별자치시장·특별자치도지사·시장·군수·구청장이 제1항에 따른 지정을 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 장기요양기관을 지정하여야 한다. 이 경우 특별자치시장·특별자치도지사·시장·군수·구청장은 공단에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하거나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.

1. 장기요양기관을 운영하려는 자의 장기요양급여 제공 이력
2. 장기요양기관을 운영하려는 자 및 장기요양요원이 이 법에 따라 받은 행정처분의 내용
3. 장기요양기관의 운영 계획
4. 그 밖에 특별자치시장·특별자치도지사·시장·군수·구청장이 장기요양기관으로 지정하는 데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정하는 사항

④ 특별자치시장·특별자치도지사·시장·군수·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장기요양기관을 지정한 때 지체 없이 지정 명세를 공단에 통보하여야 한다.

⑤ 제2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재가급여를 제공하는 장기요양기관 중 의료기관이 아닌 자가 설치·운영하는 장기요양기관이 방문간호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방문간호의 관리책임자로서 간호사를 둔다.

⑥ 장기요양기관의 지정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.

■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

제11조(장기요양급여 종류별 장기요양요원의 범위) ① 법 제23조제2항에 따른 장기요양급여 종류별 장기요양요원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법 제23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른 방문요양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장기요양요원

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.

- 가. 「노인복지법」 제39조의2에 따른 요양보호사
- 나. 「사회복지사업법」 제11조에 따른 사회복지사
- 2. 법 제23조제1항제1호나목에 따른 방문목욕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장기요양요원은 「노인복지법」 제39조의2에 따른 요양보호사로 한다.
- 3. 법 제23조제1항제1호다목에 따른 방문간호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장기요양요원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.
 - 가. 「의료법」 제2조에 따른 간호사로서 2년 이상의 간호업무경력이 있는 자
 - 나. 「의료법」 제80조에 따른 간호조무사로서 3년 이상의 간호보조업무경력이 있고,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한 교육기관에서 소정의 교육을 이수한 자
 - 다. 「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」 제2조에 따른 치과위생사(구강위생 업무를 하는 경우로 한정한다)
- 4. 법 제23조제1항제1호라목에 따른 주·야간보호, 같은 호 마목에 따른 단기보호 및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시설급여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장기요양요원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.
 - 가. 「노인복지법」 제39조의2에 따른 요양보호사
 - 나. 「사회복지사업법」 제11조에 따른 사회복지사
 - 다. 「의료법」 제2조에 따른 간호사
 - 라. 「의료법」 제80조에 따른 간호조무사
 - 마. 「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2항제3호에 따른 물리치료사
 - 바. 「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2항제4호에 따른 작업치료사
- ② 제1항제3호나목에 따른 교육기관의 지정기준 및 절차, 교육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.

☞ 장기요양급여 종류별 장기요양요원의 범위

장기요양급여 종류	장기요양요원 범위
방문요양	요양보호사, 사회복지사
방문목욕	요양보호사
방문간호	간호사(2년이상 경력), 간호조무사(3년이상 경력 및 교육이수), 치과위생사(구강위생 업무 한정)
주·야간 보호, 단기보호 시설급여	요양보호사, 사회복지사, 간호사, 간호조무사, 물리치료사, 작업치료사

참고2**서울시 관련 조례 제정 현황**

▣ 서울시 : 「서울특별시 장기요양요원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」 제정(2016. 1. 7.)

▣ 서울시 내 16개 자치구 제정 · 시행 중

- 강남구, 강동구, 강북구, 광진구, 금천구, 노원구, 도봉구, 동대문구, 동작구, 서대문구, 서초구, 성북구, 송파구, 영등포구, 은평구, 중랑구

※ 그 외 26개 광역 기초 자치단체 제정 · 시행 중

참고3**마포구 장기요양기관 및 장기요양요원 현황 (2020. 7월 기준)**

구 분	시설 수	장기요양요원 수
노인의료복지시설	4개소	229명
재가노인복지시설	21개소	595명
재가장기요양기관	72개소	1,999명
총 계	97개소	2,823명